

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
(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 겸용)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 7일	
신고인	업체명		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 성명			전화번호/팩스번호	
	주소				
신고내용	제품명			모델 구분	
	모델명			용량 cm³	
	마개 안지름 mm			분류 유형 방식	
	제조업체명			대표자 성명	
	주소				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3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안전인증기관장 귀하

첨부서류	1.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(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) 1부	수수료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
	2. 어린이보호포장의 제품설명서 1부	
	3.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	

처 리 절 차								
신고서 작성 신고인	→	접 수 처리기관 (안전인증기관)	→	확인 및 결재 처리기관 (안전인증기관)	→	확인증명서 작성 처리기관 (안전인증기관)	→	확인증명서 발급

신고확인번호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안전인증기관장

직인